2016년도 축산계열화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

1. 목 적

○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사전 분쟁발생 방지 등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모범사업자 지정

○ 계열사육농가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

2. 근 거

○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모범사업자 지정)

3.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

○ 신청 대상 :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

○ 제출 서류

-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-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(가축의 사육, 축산물의 생산·도축·가공·유통 등에 관한 사항)을 적은 서류(계약농가현황, 도축가공실적, 유통판매실적(1년간) 등)
-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(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)
-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체결한 표준계약서 사본(3부) 및 그 이행에 관한 서류(사육비 지급관련 거래내역, 병아리 품질기준, 사료 품질기준 등)

  * 표준계약서 미사용 계열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대상에서 제외

-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경비 지급내역
-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
- 계열농가 교육실적 및 방역프로그램 추진현황 등

○ 신청서 등 제출처 : **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**

○ **신청기한 : 2016. 1. 1. ~ 1. 30.**

4. 신청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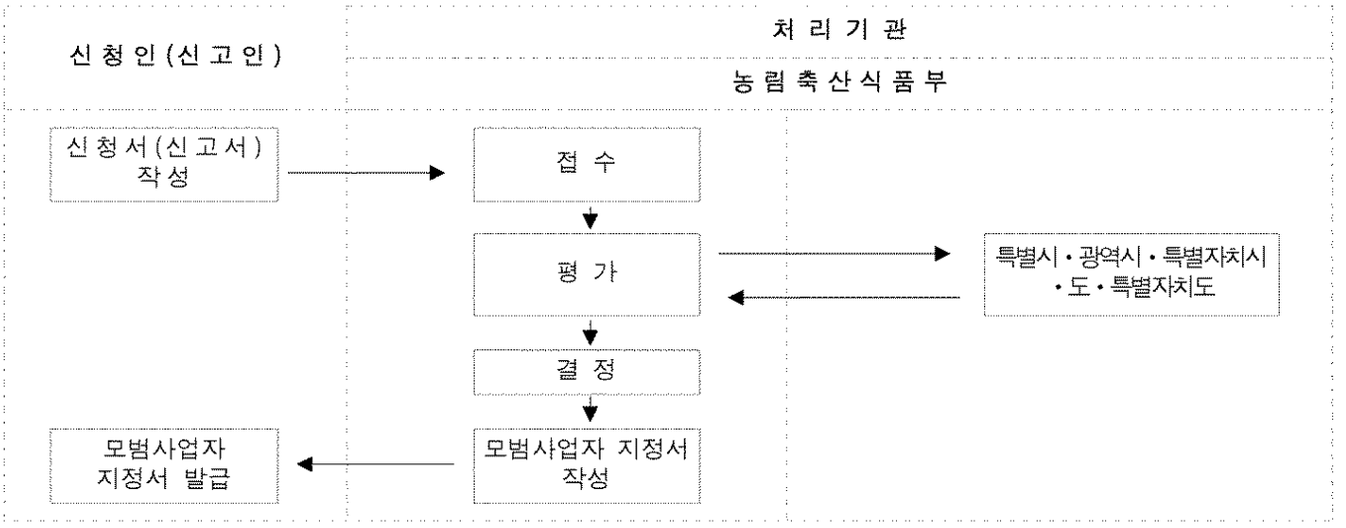

5.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: '붙임' 참조

6. 모범사업자의 지정

○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(별지 제2호서식)의 지정서 발급

7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

○ 모범사업자 및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사육농가 지원

-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

  * 인센티브자금 지원 : (규모) 150억원, (한도) 육계 30억원, 오리 20억원, (조건) 0~1%, 2년이내 상환

-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금리 등 정책·제도 운영 시 우대

-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

-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

[붙임]

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

1. 지정기준

계열화사업자의 사업 내용이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. 다만, 법률 제1135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.

가.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것

나.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에서 "계약서에 포함할 사항"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

다.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 이상일 것

2. 세부 지정기준

세부 지정기준	계약서에 포함할 사항
가.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할 것	
나.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1)부터 4)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농가에 교부할 것. 이 경우 1), 2), 4)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1)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,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)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)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)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	○
다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	○
라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, 사육경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	○
마.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고 가축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할 것	○
바.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로 정하여 사육경비를 지급할 것	○
사.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	○
아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	

세부 지정기준	계약서에 포함할 사항
자.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농가의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	
차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3회 이하일 것	
카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없을 것. 다만, 해당 분쟁의 조정을 애초에 신청한 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.	
타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이나 공무원의 질문·검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	
파.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할 것	

[별지 제1호서식]

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[ ] 지정 [ ] 연장 [ ] 변경 신청서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
신청인 (신고인)	법인명 (사업자명)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	전화번호
지정·연장 신청내용	축 종	[ ] 육계 [ ] 토종닭 [ ] 산란계 [ ] 오리 [ ] 염소
	주사업내용	
변경 신고내용	변경일	
	변경내용	
	변경사유	

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([ ] 지정, [ ] 연장, [ ] 변경)을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지정·연장 신청	1. 계열화사업자 일반현황(가축의 사육, 축산물의 생산·도축·가공·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)을 적은 서류 2.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 및 그 이행에 관한 서류 3. 계약농가에 대한 사육경비 지급내역 4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	변경 신고	1.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 2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

※ 뒤쪽의 확인사항란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뒤쪽)

확인사항	○	×
가.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할 것	[ ]	[ ]
나.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1)부터 4)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농가에 교부할 것. 이 경우 1), 2), 4)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1)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,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)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)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)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	[ ]	[ ]
다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	[ ]	[ ]
라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, 사육경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	[ ]	[ ]
마.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고 가축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할 것	[ ]	[ ]
바.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로 정하여 사육경비를 지급할 것	[ ]	[ ]
사.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	[ ]	[ ]
아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	[ ]	[ ]
자.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농가의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	[ ]	[ ]
차. 법 제25조에 따른 계약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3회 이하일 것	[ ]	[ ]
카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없을 것. 분쟁의 조정 신청을 애초에 신청한 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는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있어도 ○란의 [ ]에 √표를 합니다.	[ ]	[ ]
타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이나 공무원의 질문·검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	[ ]	[ ]
파.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할 것	[ ]	[ ]

※ 확인사항은 신청인·신고인이 작성하며,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세부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[ ]에 √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(신고서)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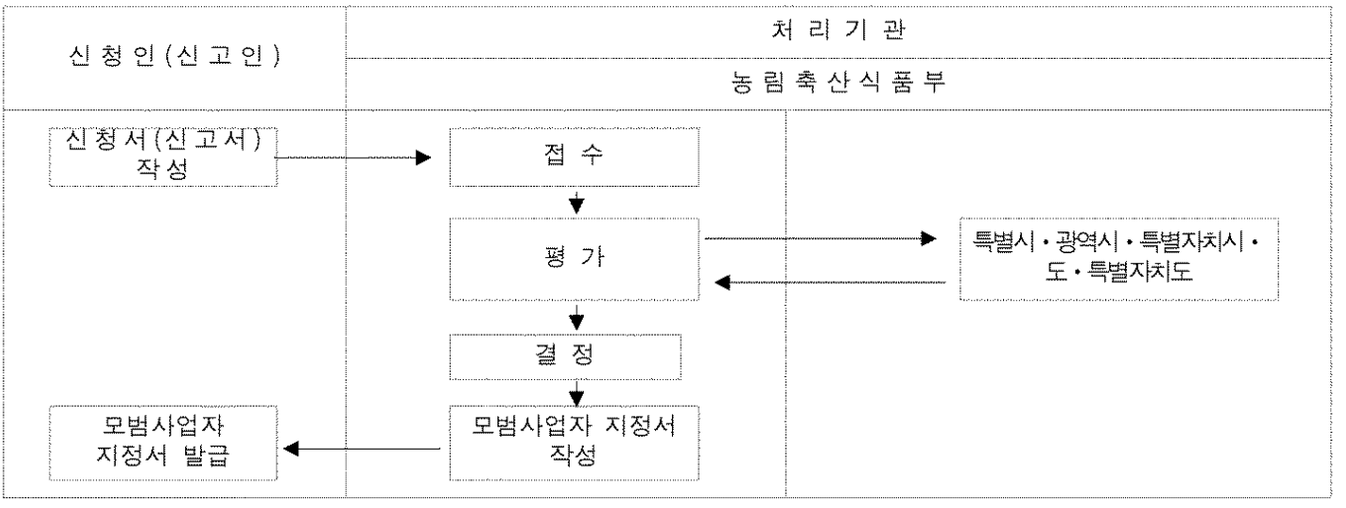

:

■ 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	유효기간
	20 . . . ~ 20 . . .

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

법인명(사업자명): 사업자등록번호:

축 종:

주 소:

주 사업내용:

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.

20 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